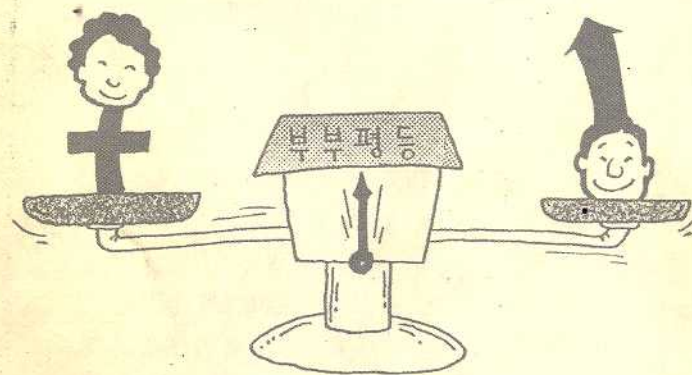


Mc.c.17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아내구타 · 아내에 대한 성적학대 · 아내강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 거창여성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교평화여성회,
-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YMCA,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발행

●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 중구 정동 1-23, 전화 : 738-2883)

편집

●
한국여성의전화

11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상담전화: 263-6464/5, 강간상담: 269-2965
 ●사무전화: 269-2962/4, F A X : 269-2966

목 차

자료집을 발간하며/3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4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실태/6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와 후유증/8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발생원인/10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14
아내구타·아내에 대한 성적학대·아내강간에 대한 처벌법의 문제점/18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대안/20
성폭력 추방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22

자료집을 발간하며

검찰집계에 의하면, 80년에는 연간 5천6백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년에 6천4백75건, 90년에는 7천3백22건으로 늘었고, 92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중요 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 감소했으나 강간범죄등 성폭력범죄는 1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잘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룸살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이발소, 터키탕, 러브호텔등의 향락산업은 오늘날 전국 45만개 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이들 향락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연 4조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전반의 풍도가.성의 상품화와 성폭력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양상은 부녀자 인신매매, 강도강간,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 아내에 대한 성적학대로 직결되는 아내구타, 직장내 성적희롱, 강제된 매매춘의 양상으로 다양화 되어 가고 날로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이제 결코 개인의 고통일 수 없으며, 더 이상 여성개인의 운이 나쁜 일, 불행한 일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성적 상품으로 대상화 시키는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인간적인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특위는 성폭력 범죄의 추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형태별로 실태와 발생원인, 법적 제도적 대책방안, 행동지침등이 담긴 성폭력추방운동 자료집을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책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폭력을 추방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며,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 8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혜수
부위원장 최영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부부(동거자) 사이에 일어나는 구타, 성적학대, 강간도 성폭력입니다.

흔히 “복어와 여자는 3일에 한번씩 패야 맛이 난다”, “내 여자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라냐”는 식의 말이 대변하듯이 가정에서의 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 정도로 인식하나 아내구타는 배우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남편의 구타가 아내의 성적 학대로 이어지고, 구타 후 엔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매맞는 아내를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아내를 구타,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간하는 행위를 부부관계의 부적응 차원으로 치부하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생각하여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임에도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는 부부관계라는 미명하에 성폭력을 합리화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과는 가장 멀 것으로 기대되는 긴밀한 부부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집안싸움”,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며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가장 건강해야 할 부부사이와 평화로와야 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의 증가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실태

● 아내구타의 실태

1989년 한국궐련의 조사에 의하면 57.5%의 남자들이 배우자를 때린 일이 있다고 하며, 한국여성의전화 91년 구타상담(전화상담)총 1,167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 이상 맞는 경우가 47.1%, 한 달에 2~3회 이상이 41.2%, 일년에 몇차례 비주기적으로 맞는 경우가 14.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내구타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타방법을 보면, '손발로 구타'하는 경우가 76.5%로 가장 많고 '닥치는 대로' 46.7%, '홍기사용' 29.1%, '가둬놓고 때림' 18.4%, '옷벗기고 때림' 10.6%, '담배불로 지짐' 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기 사용의 경우 담배불로 지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3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타할 때 구타자의 감정상태가 충동적이며 적대감과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타 당시 주변에 있는 집기들-칼, 낫, 혁대, 쇠파이프 등 눈에 띄는 것 모두가 홍기로 동원되어 위협하는 수단이 되거나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여 치명적 상처를 남깁니다.

(아내구타 방법)



자료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91년 상담통계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실태

● 아내에 대한 성적학대와 아내강간의 실태

아내구타는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또한 구타후 두려움과 통증으로 꼼짝 못하는 아내에게 난폭하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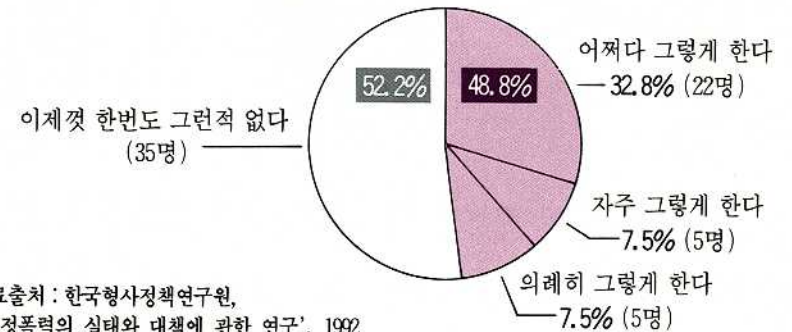
더욱이 아내구타가 상습적이고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구타후 강간'이 관례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후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거나, 칼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서 폭력 직후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 봤을 때 48%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아내구타 면접상담 중에서도 35% 정도가 아내강간을 당한다고 응답했으며, 87년 김광일보고서에 의하면 54%가 '구타후 강간'이 관례화 되어있으며 이중 6%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20%는 자녀들이 눈치 챌 수 있는 상황에서 강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타후 아내강간' 행위는 매맞는 여성들로 하여금 죽고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게 할 만큼 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아내에게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아내를 강간하는 범죄행위로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나라가 아내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내강간을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적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직후 강제적 성관계의 발생정도
(심한폭력경험여성의 경우)



자료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 신체적 피해

남편의 구타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뺨 한두대에서 무차별 구타로 통원치료까지 하고 심한 경우 온몸에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져 입원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구타상담 통계에 의하면 51.7%가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중 50%가 3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절상 41%, 관절탈구 21%, 유산 11%, 안구출혈 및 파열 6%이고(김광일 보고서, 1987) 그외 고막 터짐, 온몸에 화상입음 등과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이와같이 심한 것을 보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가 일반인들이 흔히 상상하듯 “칼로 물베는 부부의 사랑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스컴에 보도된 사건중 아내구타로 인한 살인사건이 6건이나 발생한 것을 보아도 아내구타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 정신적 피해

아내구타는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지속적 폭력으로 신체적 손상 이외에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일으켜 인격파탄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결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 ▷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같은 자존심의 저하
- ▷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으로 인한 죄책감
- ▷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사회생활 부적응
- ▷ 가출, 자살기도, 자해, 살인등의 행동장애
- ▷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등의 정신병 증상 초래
- ▷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가슴답답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신체장애등입니다.

● 자녀가 입는 피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에 의하면 구타남편의 35%가 폭력가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타남편들은 아내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구타하는 경우가 많으며(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중 40%), 구타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자람으로써 은연중 폭력을 배우게 되어 제2의 구타자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구타는 평화로와야 할 가정을 폭력과 횡포가 난무하는 범죄장소로 만듦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에게 은연중 폭력을 배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

●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반적으로 때리고 맞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기부, 경찰에 의한 고문과 폭력, 여성노동자에 대한 구사대의 폭력, 학교에서의 체벌 등 각종 잔인한 폭력들이 통치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당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TV,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의 개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권위에 의한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문화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문화는 우리사회가 불평등 분배, 분단상황, 독재정권, 저질외래문화 등 많은 갈등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

●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이 문제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연속극에서 '대밭이'는 자신의 아내에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여자는 육아, 가사일을 전담하는 사람(결혼이 평생직장)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다름으로 인한 역할분담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남편은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가정 내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성이 '가사'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차단당하고,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이 남아있는 한 부부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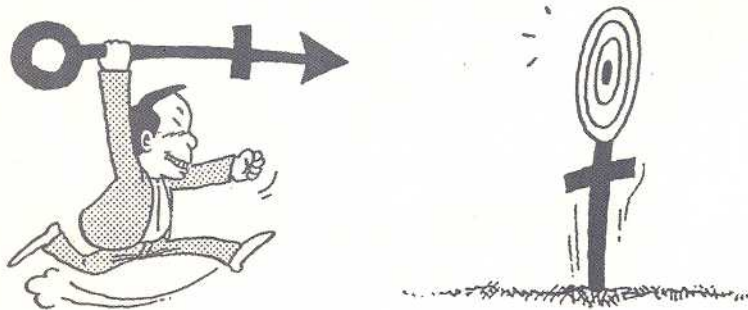
● 자기 아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아내는 때려야 맞(?)이 난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 패야 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남성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가 자기 아내에게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구타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아내를 때리면서 “남자다움을 보여주겠다”, “교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혼수를 적게 해 왔으니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폭력이 그렇듯이 아내구타 역시 가해자의 행동은 ‘남성다움 혹은 야성미(?)’로, 피해자에게는 ‘맞을 짓을 했다’는 왜곡된 인식이 많습니다. “아내가 말대꾸를 해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혹은 “남성은 원래 공격적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맞고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 즉 “내 여자 내가 때리는데 누가 말리냐”식의 자신의 수발을 들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남성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포르노 영화, 스포츠 신문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무려 67.6%, 여성의 경우 46.0%에 달했습니다. 아내를 때릴 수 있으며 때려도 비난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가정을 양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왜 도망을 못 가느냐, 왜 맞고 계속 거기서 사느냐구요?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사례를 보면 15년, 20년씩 맞고 살면서도 이혼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속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그렇게 참고 사니까 맞아도 싸다며 오히려 맞는 아내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매맞는 아내들이 구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대부분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자신의 처지나 요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식이나 주위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혹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온갖 폭력을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냉대, 구타 상황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노력하는 여성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못된 여성’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 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가 어려운 구조(여성임금도 남성임금의 52%)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지속적인 구타 상황으로부터 아내를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잘못된 생각 1.

아내구타는 부부싸움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구타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아내구타는 가정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구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아내구타는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부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잘못된 생각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기 때문에 맞다는 생각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구타의 구실을 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타의 책임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잘못된 생각 3.

아내구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여성을 천시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입니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된다”는 생각,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 바로 이런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고 만연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편네를 좀 때렸다 해서 뭘 그렇게 떠들어 대느냐”는 항의 또한 아내구타를 단순한 혹은 우연한 손찌검 정도로 잘못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내구타가 한 인간을 폭력의 노예로 만들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이라도 아내를 구타한다는 것은 올바른 부부사이 아닙니다. 아내구타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잘못된 생각 4.

부부사이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부사이에든 부인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입니다.

더욱이 아내구타시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구타 후에는 아내가 통증과 두려움으로 꼼짝 못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 아내에 대한 강간 행위입니다.

● 잘못된 생각 5.

아내구타자는 알콜 중독자이다—술 때문에 구타한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중에는 알콜 중독자가 더러 있지만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내구타의 50% 정도는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술이 깨면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술은 구타의 구실과 핑계를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잘못된 생각 6.

아내구타는 하층일수록 많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구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매춘업자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 직종, 교육정도에 상관 없이 아내구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잘못된 생각 7.

왜 맞고 계속 사느냐, 구타당하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구타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구타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구타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구타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구타 문제는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내구타,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3조)'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행 법규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반폭행규정—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의 문제점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에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해도 단순한 가정문제로 여기고 무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구타 피해가 증거로 입증돼도 “부부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나”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상습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규정하고 있는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의 문제점

남편이 칼, 흉기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폭행 적용시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타남편의 전과기록을 요구하고 있어 전과가 없는 경우 구타남편에 대한 법적제재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구타남편들이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폭력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사회생활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가정내에서 그들이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의식 때문입니다.

“남편의 구타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민법 친족법 840조 3항’의 문제점
“남편의 구타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이 규정은 구타당하는 여성을 돕는 유일한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경제적 자립문제, 자녀양육 문제,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구타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진단서등)의 어려움 때문에 막상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어렵게 재판이혼을 요청해도 판사가 이혼의 사유로 보지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 역시 현실적으로 피해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피해여성들은 다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장파열, 유산 등 치명적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 입원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부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구타에 대한 병원측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입니다.

● **형사사법 처리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중 신고단계에서 경찰에 의해 무마되는 경우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동네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일이라고 외면하고 돌아가거나, 부부 칼부림 사건이 나자 이웃이 신고해도 무마하고 돌아가고, 목을 조르고 핵대로 때리고 재떨이를 던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부부싸움이라고 훈방조치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서 보는 가정불가침주의의 사법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관행으로서,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개개 가정의 고유한 문제로 규정하고 각 가정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영구히 방치되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장소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떤 법적 대책이 세워져야 할까요?**

- ▶ 아내강간도 성폭력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 아내구타를 비롯한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 ▶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격리명령(가정에서 일정기간 축출하고 성행위 금지), 치료명령, 보호명령(가정원등에서 교화), 자격형(가정파탄의 경우 민사상 친권, 양육권을 박탈하고 이혼시 재산분할권등 직권판단), 피해보상제도(구타아내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을 신설해야 합니다.

●●●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대안

●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긴급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 피난처에서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등의 도움 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지도, 여성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 구타남편을 위한 격리치료,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폭력가정의 근본적 원인제공자는 구타남편입니다. 외국의 경우 구타남편에게 처벌과 치료의 선택권을 주어 그들 스스로가 치료를 택하여 교정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구타남편을 위한 상담, 치료기관의 설치가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아내구타 관련법(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내구타도 일반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내구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내구타를 가정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에서부터 ‘여성문제, 성폭력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교육과 계몽이 절실합니다. 문화부, 교육부, 보사부 등 정부 각부처에서는 이를 제도화시켜 지속적인 국민계몽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대안

● 수사당국,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여성문제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도 이를 집행,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수사당국,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여성문제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 아내구타를 비롯한 가정내 성폭력에 대해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부부간의 폭력을 문제시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사회통념으로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연중에 배어있는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와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는 매맞는 아내를 양산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 폭력문화·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사회 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때리는 남편, 매맞는 아내는 우리사회의 권위주의, 반민주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을 위해 싸울 때 우리 가정과 사회의 평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 여성의 지위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제도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변화할 때 평등한 부부관계가 정착됩니다. 여성이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아내구타에 대해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합시다.

- ▶ 앞으로는 한 대라도 맞아서 안된다는 각오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구타는 한 번 용인하면 습관이 되어 점점 정도가 심해지게 되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애인이 구타할 때 (손찌검이나 위협적인 몸짓, 말 등)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신혼 때 구타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과 희생이 여성의 미덕이라는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납시다.
흔히 사람들은 “여성들은 참고 기다리면 꼭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평안하다”는 생각으로 늘 참고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당하는 남편으로부터의 구타는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여성에게만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한 인간이라기 보다도 여성을 가정내에서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고정 역할만을 강조하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 아내구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간 구타를 당하면 신체적 파손으로 골병이 들고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구타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 가슴두근거림, 어지러움과 같은 증세가 생깁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을 상실하여 무기력함을 느끼고 심하면 정신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 ▶ 이웃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면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구타당하는 아내를 구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줍니다.
- ▶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항의합니다.
- ▶ 피해여성이 남편의 구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 구타사실의 증거와 진술이 매우 필요할 때 피해여성을 위해 도와 줍시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 ▶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창피한 일로 숨기지 말고 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합시다.

한국여성의전화	02) 269-6464, 6465
마산여성의쉼터	0551) 96-9127
부산여성의쉼터	051) 817-6464, 4321
대구애린회 여성의전화	053) 742-1331-2
광주여성의전화	062) 226-7739
전북여성의 전화	0652) 87-7324
대구여성회	053) 421-67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 522-1041
부산성폭력상담소	051) 817-8228
부산여성회	051) 87-7262
경남여성회	0551) 44-8400
거창여성회	0598) 43-5561

- ▶ 더 많이 맞기 전에 일단 맞는 장소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비상꾸러미를 준비하십시오. 비상꾸러미는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옷, 약간의 현금 등...
- ▶ 피해사실을 친정식구나, 이웃에 알리고 맞은 부위나 상처를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한 경우 맞은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떼어둡시다.
- ▶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합니다.